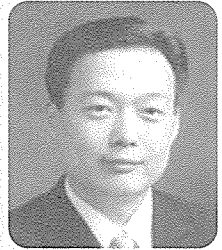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양돈법률상담코너'에 게시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



김태욱 변호사

영농법인 탈퇴에 관한 문의

Q 회칙을 모르는 상황에서 사무실과 뜻이 안 맞아서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이 영농가가 넘었지만 지금은 다섯 농가밖에 없고 처음 출자금에서 부동산 및 총자산이 4배정도 불어난 상태입니다. 지분 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요? 출자금에서 지분을 받는 건지 아니면 총자산에서 지분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정관의 관련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출자한 지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민간기업에 토지가 수용될 때에 관한 문의

Q 내년쯤 양돈장 근처에 실버타운, 골프장 같은 것이 들어와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협상 시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국가수용에서 보상해 주는 것과 같은지 만약 다른 것이 있다면, 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떤 식(양도세)으로 내는지 궁금합니다.

A 국가수용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보상금을 책정하고 수용에 불응할 경우 수용금을 공탁하고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민간도 예외적으로 강제수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문의하신 실버타운이나 골프장(정부 정책으로 정부의 위임을 받지 않고 업체의 이익을 위한 경우) 건설의 경우, 이는 수용이라기보다는 그 업체와의 사적 매매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격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매매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그 업체에 양돈장을 매매로 넘긴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보유기간과 매매대금 등에 따라 과세율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고 관할 관청 과세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양돈**